

# 부 산 고 등 법 원

## 제 5 민 사 부

### 판 결

- 사 건 2017나50808 총회결의무효확인  
원고, 피항소인
1. 이정우  
부산 금정구 오류대로 84, C동 301호(부곡동, 부곡빌리지)
  2. 박동수  
대전 유성구 봉명로 48, 804동 1401호(원신흥동, 신안인스빌리베라)
  3. 김영채  
서산시 팔봉면 진장2길 60-21
  4. 서재원  
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4, 2001호(반송동, 동탄파라곤II)
  5. 김진홍  
전남 해남군 읍성내리 21-9
  6. 곽원섭  
대구 수성구 들안로 135-1(중동)
  7. 함원중  
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559(봉명동)
  8. 이희성  
전주시 덕진구 장동 산131-1

9. 김진운

여수시 시청서2길 51-6(학동)

10. 서용순

청주시 흥덕구 신울로146번길 11-7(복대동)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성주, 남일

피고, 항소인

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

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1, 4층(부전동, 양지빌딩)

대표자 이사 조장래, 박재홍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

제 1 심 판 결

부산지방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5가합49777 판결

변 론 종 결

2017. 9. 6.

판 결 선 고

2017. 10. 11.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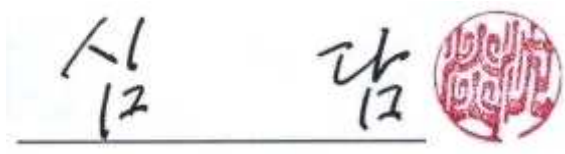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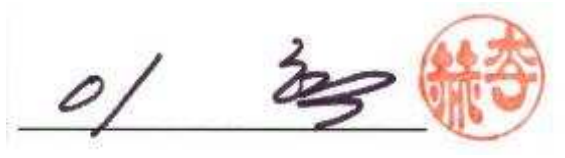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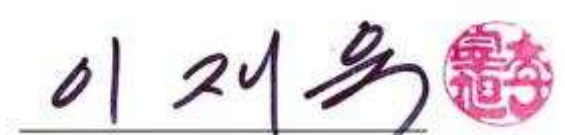
[청구취지] 피고가 2015. 11. 7.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
[항소취지]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	판사	심 담	
	판사	이 혁	
	판사	이재욱	

## 목 록

### 1.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

정관 제34조 제1항 '연맹의 임원으로 공동대표 2인,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, 감사 2인 이내를 둔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'는 규정 중 '회장 1인,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, 감사 1인 이내를 둔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'로 개정하기로 하고, 총회 이후 실시하는 이사 선거의 결과에 따라 5인의 이사가 선임되면 그 중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은 선출된 이사들 중 연장자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결의

### 2. 제2호 의안 주사무소의 이전의 건

정관 제3조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'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21 양지빌딩 4층'을 삭제하고 차후 임원진이 구성된 경우 새로운 주사무소의 장소를 '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7번길 12, 1층 101호(감전동)'에 두기로 한 결의.

# 정본입니다.

2017. 10. 11.

부산고등법원

법원사무관 이태근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부산고등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